

일반대학원 운영 내규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시행과 대학원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원생이 학위수여를 위해 제출하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편입학생의 학점인정) ① 편입학한 원생은 입학 후 수강 정정기간 전까지 편입전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포함한 소정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장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편입학기별 인정학점이 부족하여 정규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원생은 학점등록을 통해 잔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.

제3조(선수과목의 과목별 면제) ①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이전 학위과정(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학사과정, 박사는 석사과정)에서 취득한 교과로 선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② 선수과목을 과목별로 면제받고자 하는 원생은 입학 후 수강 정정기간 전까지 이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를 포함한 소정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학과장 승인을 받은 과목은 선수과목 이수를 면제하며, 원생은 나머지 잔여 학점에 해당하는 선수과목만 이수하면 된다.

제4조(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신청 등) ① 국내 학점교류 협정 대학원에서 전공교과를 이수하고자 하는 원생은 방학 중에 고시되는 협정 대학별 학점교류 일정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허가를 득해 대학원실에 신청해야 한다.(2025.2.12. 개정)

② 국외 대학과의 교환교류를 희망하는 원생은 매 학기 국제처 교환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학과의 심사를 거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프로그램 종료 후 1개 학기 이상을 본교에서 재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현장실습·창업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처리) ① 현장실습·창업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원생은 매학기 초 수강신청 전까지 지도교수 승인 및 소정서류를 갖춰 대학원실에 제출해야 한다.(2025.2.12. 개정)

② 현장실습 학점제(3학점)는 총 160시간 이상, 현장실습 학기제(9학점)는 총 480시간 이상 근무(휴게시간 포함) 후 매 학기 종강 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기업체 책임자 및 지도교수의 평가 결과로 학점을 인정한다.

③ 창업실습은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한하며 창업실습 학점제(3학점)는 총 160시간 이상, 창업실습 학기제(9학점)는 총 480시간 이상 근무(휴게시간 포

함) 후 매 학기 종강 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교육센터장의 평가결과로 학점을 인정한다.

- ④ 연구프로젝트 학점제(3학점)는 총 90시간 이상, 연구프로젝트 학기제(9학점)는 총 270시간 이상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활동 수행 후 매 학기 종강 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지도교수의 평가로 학점을 인정한다.

제6조(외국어시험 면제 처리) ① 신(편)입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검증 가능한 공인어학성적 등 증명서류를 대학원실에 제출하여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.(2025.2.12., 2026.1.20. 개정)

- ② 재학 중 국제저명 학술지에 영어 논문을 게재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원생은 nDRIMS에 연구실적을 등록하고,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대학원실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.(2025.2.12., 2026.1.20. 개정)

- ③ 외국어시험 합격처리는 면제 신청을 한 당해학기 외국어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한다.

제7조(종합시험 논문게재 합격처리) ① 논문게재를 통해 종합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원생은 논문이 게재될 때마다 nDRIMS에 연구실적을 등록하고,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대학원실에 종합시험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.(2025.2.12., 2026.1.20. 개정)

- ② 논문게재 종합시험 합격 처리는 면제 신청을 한 당해학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한다.

제8조(종합시험 과목대체 합격처리) ① 시험과목 교과성적 또는 학과인정 연구실적으로 종합시험 과목별 대체합격 인정 학과는 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.

- ② 과목별 대체 희망 원생은 매 학기 종합시험 원서접수 기간 중 일반학생과 동일하게

응시 희망 교과목을 신청하고, 학과별 종합시험일 전까지 학과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- ③ 학과장은 증빙서류 검토 후 해당 교과목을 대체 합격처리한다.

제9조(초록 신청 방법과 탑재) ① 초록발표 신청은 지도교수의 사전 지도를 받아 nDRIMS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서식에 따라 논문 개요를 탑재한다.

- ② 학과장은 최종 판정 후 별지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제10조(논문심사) ①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
2. 논문내용의 적절성 및 독창성
3. 연구성과
4. 연구윤리 준수 여부
5. 체제의 완비, 논지의 일관성, 배경 지식과 참고문헌 활용도 등 종합 평가

- ②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고, 논문의 수정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한다.

제11조(심사횟수 및 심사방법) ① 석사학위논문은 본심사 1회 이상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
- ② 박사학위논문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.

1. 예비심사는 1회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대면심사를 할 수 있다.
2. 본심사는 3회 이내 실시 및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(논문심사 결과 판정) ① 석사학위논문

1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

하여‘가’또는‘부’판정한다. ‘가’판정은 3등급(A/B/C)으로 세분화하여 판정한다.

2. 심사위원 중 판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심사기간 내에 추가심사 및 결과 판정을 완료해야 한다.

3. 참여교수 간 합의가 안 된 경우 심사위원 3인의 평가 중 2인 이상의‘가’판정으로 합격 처리한다.

4.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박사학위논문(예비심사)

1. 각 심사위원은 총평으로서 심사결과를 수, 우, 미, 양, 가로 평가한다.

2. 심사위원 5인의 평가 중 4인 이상“우”판정이면 합격으로 한다.

3. 예비심사 합격자에 한해 본심사를 진행한다.

4. 지도교수는 예비심사 각 심사위원의 총평 및 심사의견에 대한 종합의견을 확인하여 피심사자가 논문을 수정·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.

③ 박사학위논문(본심사)

1.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 투표용지에 의한 ‘가’판정과‘80점 이상(100점 만점)’을 합격으로 한다.

2. 심사위원 중 판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심사기간 내에 추가심사 및 결과 판정을 완료해야 한다.

3.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아 투표용지와 함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3조(학위논문 심사기간 연장(순연 처리))

① 학위논문 심사 결과 수정·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,

심사일지 및 심사기간연장신청서(소정양식)를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심사기간은 심사 당해 학기로부터 다음 학기까지 1회만 연장이 가능하며, 연기된 학기의 심사 기한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·보완하여 심사를 마쳐야 한다. 다만, 심사 미이행 시 최종 불합격 판정한다.

③ 심사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논문심사비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.

제14조(학위논문 재심사) ① 학위논문 심사는 초록발표, 예비심사 등 단계별 합격을 인정한다.

② 학위논문 심사결과 불합격자는 학위청구 제출 연한 범위 내에서 재심사 신청할 수 있으며, 상기 논문 제출 및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.

③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재납부해야 한다.

제15조(준용) 이 내규 중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은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22.4.22. 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5.2.12. 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직제규정 개정(2025.2.12.)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의 부서(장) 명칭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6.1.20. 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운영 내규는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개정 이전에 수행된 업무는 이 개정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.